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23호 2018. 6. 15.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 70호 관문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 7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
- 삼척시 고시 제 72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6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 2018 - 70호

관문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고시

『관문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 제34조, 제35조의2, 3, 제40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15.
삼척시장

1. 사업의 명칭 : 관문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생활공간의 정주성 제고와 삶의 질 제고 및 방문객 증가를 대비한 종합적인 공간정비
 -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마을로서 체계적인 공간정비
3. 사업비 : 500,000천원
 - 국비 (350,000천원), 지방비(150,000천원)
4. 주요사업내용
 - 위 치 : 삼척시 하장면 관문리 일원
 - 지역경관개선사업
 - 야생화정원 조성 및 마을숲 산책로 및 울타리 조성
 - 지역역량강화사업 :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5. 사업시행자 : 삼척시장(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6. 사업기간 : 2016. 03. ~ 2018. 12.
7. 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농정과 (☎ 033-570-38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고시 제2018 - 7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06. 15.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4246-13 (오분동) 외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6. 1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1-13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4246-13 (오분동)	20180615	건물신축	20090626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2	강원도 삼척시 등봉동 67	강원도 삼척시 오십천로 64-14 (등봉동)	20180615	건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오십천)명칭활용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149, 149-1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15-79	2018061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시설물명칭활용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227-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해변길 192	20180615	건물신축	20090626	궁촌해수욕장명칭활용	
5		이	하	여	백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1-13	4	4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 1-13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4246-13 (오분동)	20180615	간물신축	20180615	간물신축	20090626	구7번 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용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등봉동 67	강원도 삼척시 오십진로 64-14 (등봉동)	20180615	간물신축	20180615	간물신축	20090626	지형지물(오십진)명칭활용	
부여	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인원리 149-13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항구로 15-79	20180615	간물신축	20180615	간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 시설물명칭활용	
부여	4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리 227-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공촌해변길 192	20180615	간물신축	20180615	간물신축	20090626	공촌해수욕장명칭활용	

삼척시 고시 제2018 - 72 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제28조, 삼척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6. 15 .

삼척시장

제1조(목적)

삼척IC ~ 삼척중학교 구간은 삼척시의 관문으로 올림픽 대비 환경정비를 실시 하여 경관개선을 하였으며, 금회, 주변 고물상의 무분별한 기존 간판의 개선사업을 통하여 관광삼척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관광 삼척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함.

제2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1. 사업명 : 삼척IC ~ 삼척중학교 구간 간판 개선사업
2. 대상지역 및 정비대상

위 치	정비대상			사업예산 (천원)	시행기간	비고
	업소수	간판수	거리 (km)			
삼척시 척주로 구간 (삼척 IC ⇔ 삼척중학교)	8	8	0.8	41,000	2018	

※ 간판의 수는 조절 가능

3. 위치도 : 별도 도면 표기 구역

제3조(광고물 등 일반적인 표시방법)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2개 (지주이용간판 1개, 벽면이용간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1.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지점 또는 건물의 앞면과 뒷면이 도로에 접한 업소의 벽면이용간판
- 2. 병원, 약국의 표지등 및 이·미용업소 표지등의 돌출간판.

제4조(허가 및 신고 등)

모든 광고물은 이 규정에서 정한 표시기준에 맞게 허가 또는 신고 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조제1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5㎡ 이하의 광고물은 신고를 배제하되 표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 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디자인 및 표시 등)

- ① 광고물은 장소 또는 건물에 조화를 이루도록 크기를 조절하고, 건물의 이미지와 대비되지 않도록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야 한다.
- ② 같은 건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 광고물간 세로폭 (세로폭이 상이할 경우 하단 기준) 또는 돌출 폭을 맞추어 표시하여야 한다.
- ③ 벽면이용간판 광고물은 같은 층간에 상·하 이중으로 표시할 수 없다.

제6조(표시내용)

①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 주표시, 보조표시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문자의 비례 및 간격을 과도하게 변형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다.

- 1. 주 표시 : 업소를 상징하는 아이디어그램(Ideogram), 상호 또는 브랜드명

2. 보조표시 : 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 등
(영업내용의 경우 대표 품목 2가지 이내로 표시)

② 광고물에는 제1항의 표시내용 외에 시각적 자극을 주는 그래픽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색채)

색채는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되 원색을 지양하며, 바탕색으로 흑색류나 적색류를 사용하는 경우 간판 전체의 1/2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디자인 및 브랜드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협의를 통하여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조명)

- ① 광원은 높은 조도나 풀컬러의 사용을 금지하며 야간 조명의 경우 고효율 저 전력의 광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 외벽에 과도한 조명을 설치하거나 광고물 외형 또는 창호틀에 발광선을 표시하는 등 미관을 저해하는 조명을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안전)

모든 광고물, 게시틀,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등은 구조적·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벽면이용 간판) 벽면이용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한다.

- 1. 간판은 입체형 또는 판류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게시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폭의 80% 이내, 세로크기는 1.2m 이내로 한다.
- 3. 글자의 세로크기는 1층 45cm 이하, 2층부터 10cm를 더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제11조(들출간판)

① 간판의 크기는 게시물을 포함하여 양면 면적 5㎡이하, 두께 30cm이하로 표시한다.

제12조(지주이용 간판)

①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 건물의 부지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m, 가로크기는 1m이내로, 1면의 면적은 3㎡이내, 간판의 합계 면적은 6㎡ 이내로 한다.

② 같은장소·부지에 2개이상 표시는 연립형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연립형의 경우도 업소별 간판의 가로크기는 1m이내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점멸방식의 네온사인, 동영상(LED, LCD, PDP, CRT, 기타 이와 유사한 형식)의 표시를 금지한다.
2. 주민의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광고물은 표시를 금지한다.
3.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14조(기타사항)

법, 영, 조례, 고시 이외 별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삼척시 옥외광고물등의 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적법하게 표시되어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을 인정한다.

□ 위치도(정비시범구역 표시)

